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8. 27 선고 2019가단55799 판결 [공사대금 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B

피 고 주식회사 C

변론 종결 2020. 7. 9

판결 선고 2020. 8. 27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32,400,000원 및 2018. 10. 24.부터 2020. 3. 6.까지는 연 5%,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

판사 김정민